##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

2009. 9. 22. 제정 2018. 6. 20. 개정

- 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 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사업) 센터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응용연구와 관련 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신재생에너지개발에 관한 국내외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
  - 2. 정부기관, 학계, 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  - 3. 다학제간(물리학, 화학, 나노과학, 재료학 등) 연계 및 외국대학과의 연구·교육 교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연구 인력 양성
  - 4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  - 5. 신재생에너지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엄, 컨퍼런스 개최
  - 6.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
  - 7. 대학원생, 연구자, 정부 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 연구 교육
  - 8. 연구연보 발간, 홈페이지에의 연구 관련 정보 구축
  - 9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- 제 3 조 (센터장·부센터장) 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필요한 경우에는 부센터장 1인을 둘수 있다.
  - ②센터장은 총장이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, 부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임명한다.
  - ③센터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,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제 4 조 (조직) ①센터에 태양에너지 연구부, 수소및연료전지 연구부, 이차전지 연구부, 반도체에너지소자 연구부, 풍력에너지 연구부, 공동기기실, 에너지산학인력양성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
  - ②태양에너지 연구부는 물리학 및 나노기술(Nano Technology : NT) 접목을 통한 고효율 태양전지 셀 개발을 비롯하여 태양에너지 관련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③수소및연료전지 연구부는 수소및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촉매 개발 및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- ④이차전지 연구부는 고효율 리튬 이차전지 전극 개발 및 특성 분석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## 신재생에너지연구센터 규정

- ⑤반도체에너지소자 연구부는 광발자소자 및 열전발전소자, 전력정보기술(Information Technology: IT)소자 등을 비롯한 반도체에너지소자 관련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⑥풍력에너지 연구부는 풍력에너지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⑦공동기기실은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⑧에너지산학인력양성센터(이하 "인력양성센터"라 한다)는 에너지분야의 산업인력과 대학 연구현장을 연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인력양성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⑨행정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- 제 5 조 (부장) ①행정실을 제외한 각 부 및 인력양성센터에 부장을 둘 수 있다. 부장은 본 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②각 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 6 조 (연구위원 등) ①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특별계약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③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  - ④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- ⑤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 7 조 (연구원 등) ①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  - ②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센터장이 운영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  - ③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센터장이 임면한다.
  - ④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- 제 8 조 (연구전담교원) 센터에 연구전담교원을 둘 수 있다.
- 제 9 조 (행정인력) ①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다.
  - ②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제 10 조 (운영위원회)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신재생에 너지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위원회는 센터장, 부센터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  - ③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  - 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- 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연구위원 임명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 등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- 제 11 조 (자문위원회) 센터의 중요 정책사항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 12 조 (사업 계획 및 보고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  - 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  - 3. 운영위원 명단
- 제 13 조 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, 정부 기관 및 학술 관련 학술 재단·사업단의 연구지원금, 찬조금, 보조금 및 기타 센터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- ②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(개정 2018.6.20.)

부 칙(2009. 9. 22 제정)

이 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